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의 이해 및 KAERI 적용방안 도출

김인철*, 이성호, 이병두, 김현조, 김현숙, 정주앙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ickim@kaeri.re.kr

1. 서론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의 근간인 4대 국제수출통제[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바세나르협정(WA),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는 전략물자수출통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출통제 품목을 구체화하며 회원국들에게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엄격히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수출을 주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원 및 대학이 전략물자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CP: Compliance Program)를 구축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연구원이 전략물자의 불법수출로 인한 법적 제재 및 연구원 이미지 손상 등을 입지 않도록 자율준수체제를 구축코자 관련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CP를 이해하기 위하여, 국내·외 자율준수제도 이행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기업(연구기관, 대학 포함)들은 자율준수체제 구축이 기업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선택으로 생각하고 자율준수체제를 구축, 운영 중에 있다.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수출을 주도하는 기업의 경우 자율준수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고 등급도 AA 이상 획득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KAIST가 자율준수제도를 획득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원의 경우는 자율준수제도를 획득한 기관이 없어 KAERI가 자율준수체제를 획득, 운영한다면, 타 정부출연연구 기관에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전략물자수출통제가 세계평화 및 안보를 위한 국제무역규범이라는 인식하에 KAERI에 자율준수체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KAERI 특성을 감안한 조직, 규정, 심사, 감사, 교육 등 자율준수제도 획득에 필요한 제반준비 사항을 검토하고 구축방법을 제시코자 한다.

2. 본론

2.1 자율준수제도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는 전략물자 수출 통제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기관 자율적인 수출통제 이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하며, 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CP 신청기관은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규정, 심사, 교육, 감사 등의 체제를 갖추고 전략물자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신청 등 자율적으로 수출 통제를 이행하는 것이다. 자율준수체제는 2005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나 지정요건 등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어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정부는 2014년 선택형 CP제도를 실시하여 수출관리능력 등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현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따르면 연구기관이나 대학도 AA 이상 선택 신청할 수 있다. Table 1은 자율준수 체제 도입을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다.

Table 1. Assessment Indicators for CP

평가항목	
조직	조직 구성 및 책임
규정	전략물자 통제관련 제도 제정/운영
이행의지	최고경영자의 준수 의지
심사절차	전략물자 사전판정 및 허가 절차
교육	전략물자 관련교육계획 및 이행
감사	감사 계획/실적 등
문서관리	관련서류 보관 절차 및 방법
보고 및 시정조치	위반사례 발생 시 보고/시정 방법 등

2.2 CP 도입시 고려사항

자율준수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전략물자(기술포함)를 불법 수출로부터 기관의 법적인 제재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관점에서 당연히 구축하여야 할 시스템이다. 기관은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전략물자통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략물자에 대한 자체판정으로 기관의 책임

이 무거워 질 수 있다. 예를들어, 자율준수제도를 구축하여 수출코자 하는 물자나 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체판정 결과 수출허가를 득하지 않고 수출을 진행하였으나 추후 전략물자로 불법적으로 이전되었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자체판정한 해당기관이 책임을 지워야 한다. 그러므로 자율준수체제 등급을 부여하는 정부당국은 기관이 자율준수제도 도입시 판정능력이 적절한가를 주요한 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미국, EU등 전략물자통제에 한발 앞서있는 국가의 경우 자율준수제도를 수출주도기관이 적극적으로 획득, 추진해야 하는 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업덕목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상기에서 언급한 자체판정결과에 사기저하 되지 말고 자율준수제도를 추진해야할 것이다. 자율준수제도 도입 시 기관이 무엇보다도 특히 고려할 사항이 경영진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이행의지라고 할 수 있다. KAERI 는 경영진의지하에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KAERI 가 자율준수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에 전략물자 수출입 허가를 이행하고 있는 정부부처 및 관련법령(Fig. 1 참조)에 대하여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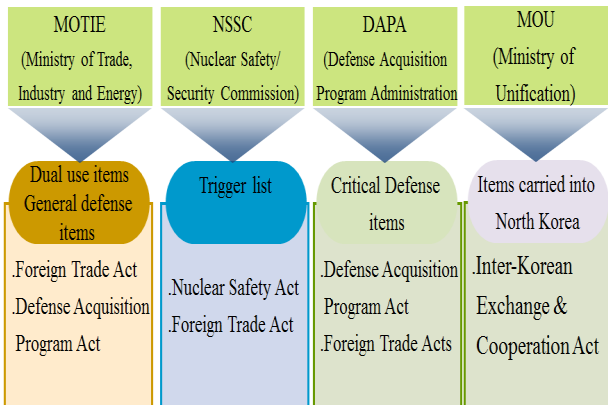


Fig. 1. Licensing Organizations and Laws related.

2.3 KAERI CP 도입방안

KAERI는 전략물자 수출입승인이 타 기관과 비교하여 볼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KAERI의 주요 연구개발 방향은 원자력전용품목이 전 연구과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금까지, KAERI가 획득한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 승인규제기관으로부터 전략물자 수출입 승인 통제 건수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가 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참조) 그러나, 원자력전용품목 외에 이중용도품목에 대하여 소홀히 할 수 없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2014년 1월부터 개정된 대외무

역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KAERI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에 송부되는 모든 정보(이메일, 팩스, 전화, 정보저장장치 등)는 관련 법에 따라 전략물자 통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지금까지 은연중 또는 무의식적으로 전송된 정보가 통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각 기관이 자율준수체제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전략물자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비확산 체제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으며, 어느 나라보다도 투명하고 명확한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 주려 한다. KAERI는 지금까지 개발된, 그리고 향후 개발될 원자력기술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전략물자 4대통제체제의 Denial List에 등재되어 원자력기술의 수출기관으로서 불명예뿐만 아니라 원자력기술 수출에 차질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기에 자율준수체제를 도입코자 하며 현 시점에서 원자력 전용품목은 자율준수체제가 인정이 되고 있지 않아,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CP도입을 추진하고, 원자력전용품목에 대한 관련법규가 개정된 이후 원자력전용품목의 CP체제 추가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Table 2. The amount of strategic items licensed at KAERI

	Nuclear Item		Dual use Item	
	Classification	License	Classification	License
2014	23	31	-	-
2013	67	46	-	-
2012	9	16	-	-

3. 결론

KAERI는 타 기관과 달리 원자력전용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승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 법령에 따르면, 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수출입은 CP제도가 인정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중용도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에 대하여 CP제도를 획득,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원자력전용품목에 대한 관련법규가 개정된 이후 원자력전용품목의 CP체제 추가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참고문헌

- [1] KOSTI 보고서 " 무역안보와 통상진흥을 위한 수출통제의 이해 " 2015. 3.
- [2] KOSTI 보고서" 전략물자 자율준수 가이드스 " 2009. 12.